

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2 - 98호

『인천도호부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2년 4월 19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도호부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2조에 따라 일치하도록 용어 정비함.
- 나. 시설물 위탁 계약기간 만료시점 도래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문화재 시설 위탁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용어 정비(안 제1조, 제2조, 제4조 등)

나.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2조에 따라 위탁기관의 대상을 정의에 맞게 용어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.
(안 제6조)

다.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9조에 따른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개정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6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9일(수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,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 (참조 :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, 전화032-440-6224, 팩스 032-440-8764, 이메일 thisman777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 : ○성 명 : ○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

인천도호부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도호부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“인천도호부청사”(이하 “도호부청사”라 한다)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하여”를 ““인천도호부청사”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인천도호부청사(이하 “도호부청사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.

제2조제4호 중 “기타 인천광역시장(이하 ‘시장’이라 한다)”를 “그 밖에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별표1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별표1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조제2호 내지 제4호”를 “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”로, “사용에 관하여 별표2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사용은 별표2에 따라”로

한다.

제5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정기휴관

가. 매주 월요일

2. 수시휴관

가. 건축물·전시물 등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해 필요한 때

나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
제6조제1항 단서 중 “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”를 “필요한 경우”로, “법인등”을 “법인·단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 위탁기간은 3년으로”를 “제1항에 따른 단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”로, “법인 등(이하 “수탁관리자”라 한다)”를 “법인·단체(이하 “수탁기관”이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수탁기관은 타인에게 관리·운영을 재위탁 하지 못한다.

제7조 중 “수탁관리자는”을 “수탁기관은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수탁관리자가”를 “수탁기관이”로 한다.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수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될 때에는”을 “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소요되는”을 “필요한”으로, “범위안에서 수탁관리자에게”를 “범위에서 수탁기관에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조선시대 관청이었던 “도호부”에 대한 역사적 의의와 정치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우리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새로 복원한 “ <u>인천도호부청사</u> ”(이하 “ <u>도호부청사</u> ”라 한다)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“ <u>인천도호부청사</u> ”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----- -----.
제2조(시설의 사용) <u>도호부청사는 다음 각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.</u> 1. ~ 3. (생략) 4. <u>기타 인천광역시장(이하 ‘시장’이라 한다)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	제2조(시설의 사용) <u>인천도호부청사(이하 “도호부청사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.</u>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그 밖에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</u> ----- ----- -----
제4조(관람 및 사용료) ① 시장은 <u>도호부청사를 관람하는 자에게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.</u>	제4조(관람 및 사용료) ① ----- ----- 별표1에 따라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
② (생략) ③ 시장은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목적 외에 일반인의 <u>사용에 관하여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·징수</u> 할 수 있다. ④ (생략) 제5조(휴관) 도호부청사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. 1. 정기휴관 -매주 월요일 2. 수시휴관 -건축물·전시물 등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해 필요한 때 -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6조(관리 및 운영) ① 도호부청사는 시장이 관리한다. 다만, 시장은 도호부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운영하기 위하여 <u>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</u> 인천소재 <u>법인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</u> 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,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<u>법인 등(이하</u>	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----- 사용은 별표2에 따라 -----. ④ (현행과 같음) 제5조(휴관) -----. 1. 정기휴관 가. 매주 월요일 2. 수시휴관 가. 건축물·전시물 등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해 필요한 때 나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6조(관리 및 운영) ① -----. ----- 필요한 경우----- 법인·단체-----. ② 제1항에 따른 단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----- 법인·단체(이하 “수

현행	개정안
“수탁관리자”라 한다)은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. ③ 수탁관리자는 타인에게 관리권을 전대하지 못한다. 제7조(시설물 등의 임의변경금지)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도호부청사 및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. 제8조(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) 수탁관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호부청사 및 그 부속물이나 전시물 등 관리를 위탁받은 재산을 훼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,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존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제9조(위탁관리의 취소)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. 1. ~ 4. (생략)	탁기관”이라 한다)----- -----. ③ 수탁기관은 타인에게 관리·운영을 재위탁 하지 못한다. 제7조(시설물 등의 임의변경금지) 수탁기관은 ----- -----. 제8조(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) 수탁기관이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제9조(위탁관리의 취소) -----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5. <u>기타</u>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 제10조(관리 운영비의 보조) 시장은 도호부청사의 관리운영에 <u>소요되</u> <u>는</u> 경비를 예산의 <u>범위안에서</u> 수 <u>탁관리자에게</u> 보조할 수 있다. 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 <u>시행에</u> <u>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5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제10조(관리 운영비의 보조) ----- ----- <u>필요</u> <u>한</u> ----- <u>범위에서</u> 수탁 <u>기관에</u> -----. 제11조(시행규칙) ----- <u>시행에</u> - -----.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☐ 지방자치법 -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- 제2조(정의) - 제9조(협약체결 등)
관련법규 정비대상	
관련자료	

관계법령 발췌사항

[지방자치법]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[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]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“민간위탁”이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수탁기관”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제9조 (협약체결 등)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.

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, 위탁내용, 위탁기간, 예산지원,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
[별지 제2호 서식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-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본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추가 비용은 발생되지 않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

3. 미첨부 사유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에 따라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임.

4. 작성자

- 문화복지위원회 신 현 환 의원